

#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24년 09월 01일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업무)**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관한 업무  
가. 모의시험 진행 및 성적 산출 등 졸업사정 준비  
나. 모의시험 성적 관리 및 학생 학업 등에 관한 지도
- 변호사시험지원에 관한 업무  
가. 특강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
나. 학생 면담 및 변호사시험 대비 등에 관한 지도
-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

**제3조 (조직)** ① 센터에 변호사시험지원센터 소장(이하 '소장'이라 한다)을 두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

- 센터에 간사를 두고 전임교원 또는 연구(객원)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- 센터에 변호사시험의 지도를 위하여 객원교수를 둘 수 있다.
- 센터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 (변호사시험지원 프로그램의 개발)** ① 센터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시험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.

② 센터는 모의시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첨삭 및 개별면담 등 적절한 학생 지도방안 마련에 노력한다.

**제5조 (변호사시험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)** 소장은 매 학년도말 정기적으로 변호사시험지원센터의 활동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6조 (학생정보 관리)**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담 내용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한다.

**제7조 (운영지침)**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2024. 9. 1.>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